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90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고민정 · 김문수 · 민형배
임호선 · 김한규 · 김영배
윤건영 · 이기현 · 문대림
박지원 · 오세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정당 가입 연령은 16세 이상으로 하향되면서 학생의 참정권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정작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엄격하게 제한돼 있음.

교원은 학생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계적 기준에 갇혀 학교에서 정치 교육은 물론 사회적 의제를 다루기도 매우 어려운 실정임.

심지어 교육 전문가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못해 교육 현장과 정책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자유 보장에 관한 권고'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정치적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권한 이용 여부 등에 따라 제한의 범위와 정도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함.

학교에서 폭넓은 정치·사회적 의제로 교육이 이뤄지고 교육 주체인 교원이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닌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교육감이 교원을 겸직 가능하도록 함(안 제23조).

나. 교원이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공직 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에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고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2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9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을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교원은 제외한다.

제47조제1항 본문 중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 중 교원과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9조제3항제3호 중 “정무직공무원은”을 “정무직공무원,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에 따른 교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검직의 제한)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제23조(검직의 제한) ① ----- ----- -----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직 중 <u>「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u> <u>에 따른 교육공무원인 교원은</u> <u>제외한다.</u>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 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u>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u> <u>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u> <u>립학교의 교원</u>	2. ----- ----- ----- ---- <u>지방공무원</u>
2.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u> <u>사람</u>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은 선거일 전 90일(제49조제1 항에서 준용되는 「공직선거 법」 제35조제4항의 보궐선거	제47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 - ----- ----- <u>해당하는</u> <u>사람(같은 법 제53조제1항제1</u> <u>호에 따른 사람 중 교원과 같</u> <u>은 항 제7호에 따른 사립학교</u> <u>교원은 제외한다)</u> -----

등의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을 말한다)까지 그 직을 그
만두어야 한다. 다만, 교육감선
거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
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생략)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 2. (생략)

3.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4호 단서 중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국회의원의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handwriting practice paper. It contains ten identical sets of horizontal guidelines arranged vertically. Each set is composed of three lines: a solid top line, a dashed middle line, and a solid bottom line, providing a structured space for practicing letter formation and alignment.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1. · 2. (현행과 같음)

3. -----

-----정무
직공무원, 「초·중등교육
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유아
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
분)제1항에 따른 교원은-----

원은 제외한다)”으로 본다. 4. ~ 14. (생략)	----- ----- ----- ----- ----- -----. 4. ~ 14. (현행과 같음)
---	---